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6.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박정환 의원 등 5명(김기열, 박종길, 박왕규, 고명욱)
- 발의일자: 2025. 5. 27.
- 회부일자: 2025. 5. 27.
- 검토기간: 2025. 5. 27. ~ 6. 2.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회복과 임시거처, 식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과 제외기준 등 적용범위 설정(안 제4조)
- 지원의 종류와 지원 내용 규정(안 제5조 ~ 제7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8조)
- 지원신청 절차 규정(안 제9조)
- 지원금 지급 방식 및 환수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4. 참고사항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긴급복지지원법」
 - 「지방자치법」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5. 27. ~ 6. 9.):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지원의 종류, 심리회복 및 임시거처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화재피해자와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화재 피해자의 경우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임시거처”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빠른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 비용 및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주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재 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2024. 1. 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1. 6., 2017. 5. 29., 2017. 7. 26.>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24. 6. 18.>

1.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본조신설 2010. 12. 7.]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12. 29.>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3개월간, 같은 호 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국내 여비 지급표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조례호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